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: 박춘선 의원 외 33명

나. 의안번호: 제3441호

다. 발의일자: 2026. 2. 9.

라. 회부일자: 2026. 2. 12.

2. 제 안 사 유

- 기후위기, 생물다양성 감소 등 복합적인 환경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행정 주도의 일회성 정책을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.
- 그동안 시민 참여형 환경교육과 거버넌스 활동이 단발적·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어,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민관 협력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.
-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·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,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을 통해 시민 참여 기반의 환경교육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에 ‘민관협력형 환경교육의 활성화’를 추가하여 시민 참여형 환경교육 추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(안 제4조제2항제10호).
- 나.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의 업무에 ‘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’을 추가하여 민·관·시민사회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체계 조성(안 제12조제2항제5호).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
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.
- 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.

5. 검토 의견

- 현행 조례 제4조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, 제12조는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수행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안 제4조제2항제10호는 환경교육계획에 ‘민간협력형 환경교육의 활성화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안 제12조제2항제5호는 환경교육센터 수행 업무에 ‘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환경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교육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임으로써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환경교육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
2. 환경교육의 현황
3.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
4.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5.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
6.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 실행 방안
7.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 활동의 활성화
8. 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
9.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10.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~ ④ (생략)

제12조(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등) ① (생략)

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2.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
3.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(이하 "기초환경교육센터"라 한다)에 대한 지원
4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

③ ~ ⑤ (생략)